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76322 저작권등록말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조용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문구류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59. 11.경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72. 2.경 그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2. 1.경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로 분할되어 D 주식회사로 존속하던 중 2006. 6. 경 그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한 뒤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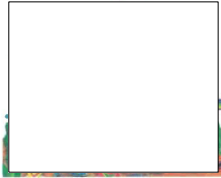
2)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 G과 형제자매관계에 있고, 2000. 2.경 원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2. 5.경부터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식회사 E가 흡수합병된 이후인 2006. 9.경부터는 원고의 중국 자회사인 'H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이사 겸 총경리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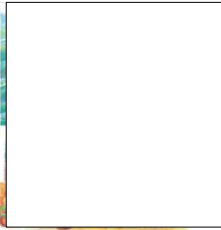
나. 원고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1)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가) 원고는 주식회사 E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E가 I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J일자 등록받은 " " 상표(등록번호 K)의 상표권자가 되었다(이하 부터는 원고와 주식회사 E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L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 상표를 출원하여 M일자 이를 등록받았다(등록번호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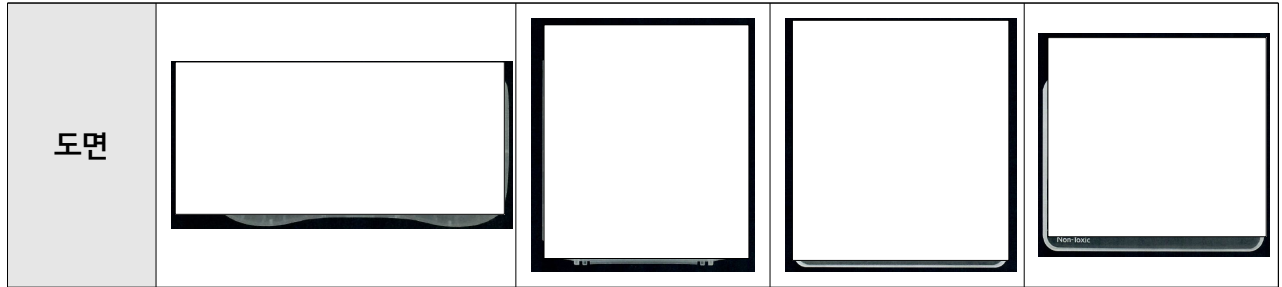
다) 원고는 O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 상표를 출원하여 M일자 이를 등록받았다(등록번호 P).

라) 원고는 Q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 상표를 출원하여 R일자 이를 등록받았다[등록번호 S, 이하 위 가) 내지 라)항의 상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

2)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가) 원고는 T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창작자를 피고로 하여 크레파스 케이스 디자인 4건을 출원하였고, 이를 U일자 각 등록받았는데(등록번호 V, W, X, Y,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고 한다), 각 디자인의 주요 도면은 아래 표와 같다.

등록번호	V	W	X	Y
------	---	---	---	---



나) 원고는 Z일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사건 각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이를 AA일자 각 등록받았고, AB일자 중국에서도 위와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이를 AC일자 각 등록받았다.

다. 피고의 저작권등록

피고는 2023. 4.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하고, 개별 저작물은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항 저작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7, 37 38, 39,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창작자는 피고가 아니고, 이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표자로 표시된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자로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권등록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2001. 5.경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창작하였고, 2002년경 이를 원고로 하여금 상표 및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원고의 문구 사업 부분에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창작하였던 2001. 5.경에는 원고의 양말 사업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할 때에 피고가 그 품의서에 이사로서 날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항 저작물과 형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하면서 피고를 창작자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창작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창작 경위나 과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을 제36호증



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그림(을 제44호증)은 그 출처나 보관 경위가 불분명하고 외형과 표현 수준이 조악하여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실제 창작 과정에서 작성된 원본 스케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자필 서명이나 연도가 기재된 부분 역시 임의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사감정 결과(을 제45호증)를 제출하여 위 그림이 변조된 것이 아니며 2001년도에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그림과 비교된 문서들은 그 작성연도, 보관환경과 보관방법, 사용 정도가 제각기 달라 그 지질이 변색되거나 마모된 정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위 그림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비교대상문서들의 작성연도 역시 1994년부터 2004년까지로 그 편차가 매우 큰바, 그 중에서도 왜 2001년으로 특정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분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사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그림이 특정연도인 2001년도에 제작된 것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상의 상표와 디자인을 사용하여 원고가 제조한 문구류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여 왔고, 이는 이 사건 제2 내지 4항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상의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상표 내지 디자인의 사용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스스로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적이 없는바, 오히려 원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출처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공표자로 표시된 자로서 그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저작물의 형상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면서 내부 품의를 거쳤던 점, ② 그 과정에서 이사였던 피고가 위 품의서에 날인하여 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상당한 기간 원고의 영업에 활용하였고, 그와 형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 사건 각 상표 및 이 사건 각 저작권을 직접 출원 및 등록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원고가 그 영업에 사용할 의도 하에 피고 등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명하여 제작한 원고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2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이경효

 판사 이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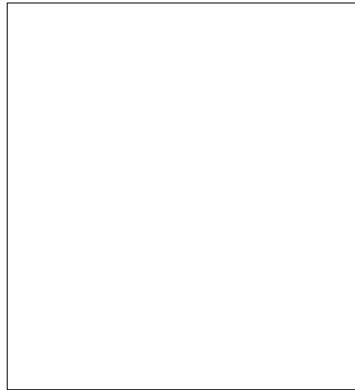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2

별지1

목 록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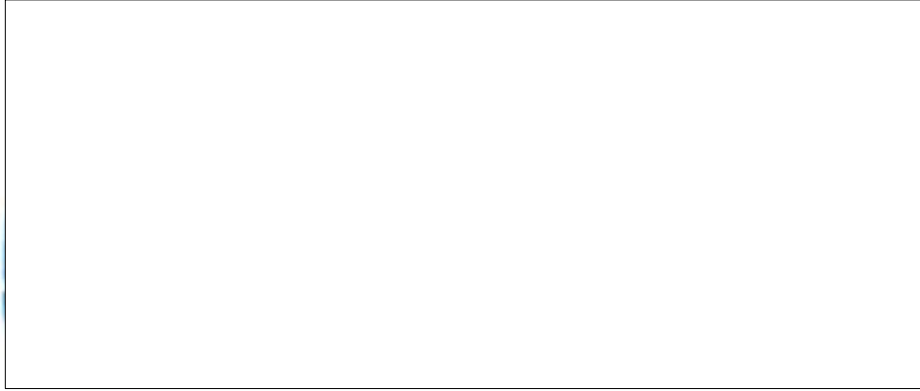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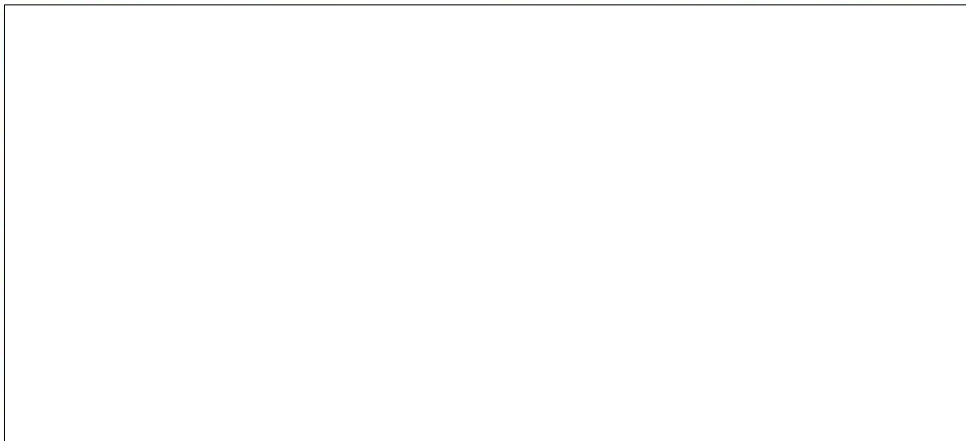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2

제3항



제4항





별지2

목 록

제1항

1. 등록번호 :
2. 등록일자 :
3. 제호 :

제2항

1. 등록번호 :
2. 등록일자 :
3. 제호 :

제3항

1. 등록번호 :
2. 등록일자 :
3. 제호 :

제4항

1. 등록번호 :
2. 등록일자 :
3. 제호 :